삼성생명 개인형 퇴직연금보험(개인형, 무배당)





계약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용을 내용으로 한 보험계약이며, 은행의신탁계약과는 다릅니다.
- □ 이 보험은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이율보증형 및 실적배당형의 운용형태가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여러 가지 운용형태를 선택하여 부담금 및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금리연동형 Ⅱ 적용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시점의 '납입 1차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부터 1년동안 확정 적용하며,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이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매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부담금 납입건별로 이율보증기간(1년, 2년, 3년, 5년)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 □ 실적배당형의 경우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며,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글로벌혼합형 펀드의 경우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 운용방법(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이율보증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펀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인형 약관 제46조 및 기업형 약관 제4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참조]

②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자(급여를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합니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급여를받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금리연동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개월이상 ~ 1년미만인 시점에 동일 자산관리기관 의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적용이율의 80%)을 적용합니다.
- □ 금리연동형Ⅱ의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1년미만:연복리 '2.0%', 2년 미만:연복리 '적용이율-1.5%', 3년미만:연복리 '적용이율-1.0%')을 적용합니다.
- □ 이율보증형의 경우 이율보증기간 이내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 급금으로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시점의「이율보증기간 중 적용이율의 기준이율」상승시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게 됩니다.(단, 시장가격조정률은 1년형은 5%, 2년형, 3년형 및 5년형은 10%를 최고한도로 함)

주요내용 요약서

◆ 1. 삼성생명 상담 채널 안내

삼성생명은 항상 고객님 가까이에서 친절하고 빠른 상담을 하고 있으니, 보험상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삼성생명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한번에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One-Call-Service 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한 조회업무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삼성생명 사이버 창구 www.samsunglife.com

삼성생명 사이버창구에 접속하시면 고객님의 계약사항, 보장내역 조회, 보험계약대출 및 상환업무 등 모든 보험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 버창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 통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사이버창구 등록신청(최초 1회)을 하셔야 합니다.

* E-mail 서비스

고객님의 E-mail을 등록하시면 자동이체 입금결과, 보험계약대출내역 등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서비스는 삼성생명 콜센터, 담당 보험설계사, 고객플라자,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분쟁조정이 필요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내용 등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및 지원 안내 >

-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 - 1332)

- 부산지원 : 051-606-1700~1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16 - 대전지원 : 042-479-5120~2

주요 보험용어 해설

- ◆ 보험약관 :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 **가입자** : 법 제24조에 의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를 말하며,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급여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이 계약 의 가입자를 말함
- ◆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 : 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자
- ◆ 부담금 : 운용관리기관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
 - ① 일시부담금 : 계약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이 개인형퇴직연금제 도로 납입한 금액. 또한, 일시부담금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기관에 적립된 적립금 을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
 - ② 개인부담금 :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 또한, 개인부담금 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기관에 적립된 적립금을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
- **◆ 급여** : 연금 또는 일시금
- ◆ 적립금 : 장래의 급여,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부담금 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 해지환급금 : 이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 운용관리기관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보험계약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
- ◆ **자산관리기관**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보험계약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

삼성생명 개인형 퇴직연금보험(개인형,무배당) 약

삼성생명 개인형 퇴직연금보험(개인형,무배당)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기초한 개인 형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합니다)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퇴직연금사업자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법 제2 9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에 의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를 말하며,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입니다.
- 2.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법 제2호제6호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5. "급여"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로부터 계약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6.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7.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사무관리보수" 및 "수탁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8.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9.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10.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11.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즉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한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이 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7조 (서류의 제출)

계약자가 연금 급여의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삼성생명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무배당)에 대한 가입 신청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 (운용관리기관)

- ①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 및 변경, 급여 지급, 적립금의 이전 및 해지, 제16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에 의한 양도 및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17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의한 업무,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제 수수료(이하 "운용관리수수료 등"이라 합니다)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하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 계약의 수행업무)

- 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법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정·운용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2. 부담금의 수령
-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5. 급여 등의 지급
-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자산관리기관이 수행 하도록 정해진 업무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① 회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이율보증형 및 제35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에서 정하는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펀드유형별로 서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 특별계정 >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제11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 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보험료납입,보험기간,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자산관리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자산관리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에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목적
- 2. 운용방법의 종류
- 3. 운용방법별 이율 적용에 관한 사항
- 4. 수수료에 관한 사항
- 5. 기타사항
- ② 제1항의 협정서는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3조 (계약자의 운용방법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가 정한 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부담금에 대하여 각각의 운용방법별 편입비율을 설정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운용방법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1항에서 선택한 운용방법 및 부담금 편입비율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의한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은 운용방법의 해지환급금 지급 및 부담금 납입 절차를 따르며, 해지환급금은 계약해당일로부터 년미만의 경과된 기간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금리연동형에서 계약일부터 1개월이상 ~ 1년미만 시점에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시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금리연동형Ⅱ에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시 해지환급금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이율보증형에서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시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실적배당형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제39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단, 글로벌혼합형의 경우는 "변경요구일+8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⑤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현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펀드의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단, 글로벌혼합형의 경우는 펀드의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8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제6조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의 지정)에서 정한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운용관리 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 드

립니다.

④ 해지환급금 계산시 금리연동형Ⅱ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이율보증형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 가격조정률(별표1)이 적용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15조 (해지시 구비서류)

계약자가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청구서 (회사양식)"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한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제16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계약의 계약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계약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계약자, 계약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자 또는 계약자 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 는 경우
-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제16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부담금의 종류)

- 이 계약에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일시부담금은 계약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이 퇴직연금제도로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일시부담금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기관에 적립된 적립금을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2. 개인부담금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납입된 개인부담금의 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부담금 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기관에 적립된 적립금을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19조 (부담금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③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20조 (계약자의 생애주기별 운용방법자동배분 선택)

① 부담금의 운용방법별 편입비율과 계약자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편입비율이 동일한 경우 및 제13조 (계약자의 운용방법 선택 및 변경) 제1항에 의해 계약자가 이율보증형(1년)과 인덱스혼합형 펀드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적립금 및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생애주기별 운용방법자동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생애주기별 운용방법자동배분」의 종류는 회사가 정한 계약자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은퇴설계형』과 회사가 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맞춤형』이 있으며, 적립금 및 부담금의 편입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설계형]

계약자 나이	이율보증형(1년)	인덱스혼합형
지정일 ~ 만 35세 해당 지정일 전일	O%	100%
만 35세 해당 지정일 ~ 만 40세 해당 지정일 전일	25%	75%
만 40세 해당 지정일 ~ 만 45세 해당 지정일 전일	50%	50%
만 45세 해당 지정일 ~ 만 50세 해당 지정일 전일	75%	25%
만 50세 해당 지정일 ~	100%	0%

[기간맞춤형(5년, 10년, 15년, 20년)]

경 과 기 간			이율보증형	인덱스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1년)	혼합형
지정일~1년미만	지정일~2년미만	지정일~3년미만	지정일~4년미만	0%	10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4년미만	3년이상~6년미만	4년이상~8년미만	25%	75%
2년이상~3년미만	4년이상~6년미만	6년이상~9년미만	8년이상~12년미만	50%	50%
3년이상~4년미만	6년이상~8년미만	9년이상~12년미만	12년이상~16년미만	75%	25%
4년이상~5년미만	8년이상~10년미만	12년이상~15년미만	16년이상~20년미만	100%	0%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운용방법자동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적립금은 「생애주기별 운용방법자동배분」지정일부터 매 1년 단위로 제2항에서 정하는 운용방법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단, 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을 지정일로 하며, 윤년(閏年) 등으로 지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지정일로 합니다.
- ⑤ 계약자는 「생애주기별 운용방법자동배분」을 선택한 경우 별도로 이율보증형(1년)과 인덱스혼합형 펀드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6조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의 지정)에서 정한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자의 경우 삼성생명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무배당)을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④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및 이율보증형의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실적배당형의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4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산출하며,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글로 벌혼합형의 경우는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8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산출하고, 기준가 적용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립금 운용방법별 적용이율(단, 실적배당형의 경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게 해당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4조 (소멸시효)

계약자의 급여 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또는 부담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급여가 발생한 후 3년간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제26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5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리연동형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금리연동형 기준이율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금리연동형 기준이율 >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 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 하는 것으로 직전 3개월간의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times 2 + 지표금리 \times 1) ÷ 3

③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전체보험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제26조 (금리연동형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 ① 금리연동형의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산출시 적용되는 적용이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합니다)은 제25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개월이상 ~ 1년미만인 시점에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지환급금 산출시 적용되는 해지

이율(이하 "중도해지이율"이라 합니다)은 「적용이율×80%」를 적용합니다. 단, 적용이율 및 중도해지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적용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적립됩니다.

제27조~제28조는 금리연동형 II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 II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7조 (금리연동형 II 적용이율)

- ① 금리연동형Ⅱ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별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로 합니다.
- 1. 납입 1차년 적용이율 : 지표금리(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로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에 결정합니다. 단,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금리연동형Ⅱ 납입 1차년 기준이율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 기준이율(%) = A1×0.7 + A2×0.3
 -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2.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 : 회사의 금리연동형Ⅱ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 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기준이율 >

금리연동형Ⅱ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 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1 + 지표금리×1) ÷ 2
-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1.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시점의 '납입 1차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부터 1 년동안 확정 적용
- 2.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 이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매1년 간 확정 적용
- ③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전체보험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제28조 (금리연동형 ||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 ① 금리연동형Ⅱ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산출시 적용되는 해지이율(이하 "중도해지이율"이라 합니다)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납입 경과기간이 1년미만은 「2.0%」, 2년미만은 「적용이율 1.5%」, 3년미만은 「적용이율 1.0%」, 3년이상은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의 「적용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제27조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에서 정한 이율로합니다. 단, 적용이율 및 중도해지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적용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적립됩니다.

제29조~제31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9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시 협정서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보험별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에 대해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별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보험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가입자의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나이(이하 "급여발생나이"라 합니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4항에 의한 단위보험 자동설정시에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의 나이가 급여발생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율보증기간이 가장긴 단위보험으로 자동설정합니다. 단,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급여발생나이까지의 기간이 최단기 이율보증기간보다 짧고 계약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금리연동형으로 운용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30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① 이율보증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표금리
-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지방채 수익률)로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 손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단, 시중금리 및 기 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 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율보증형 1,2,3년형의 경우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1년만기/2년만기/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 5년형의 경우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1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 A1×0.7 + A2×0.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2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 A1×0.7 + A2×0.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 A1×0.6 + A2×0.4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 A1×0.6 + A2×0.4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③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전체보험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제31조 (이율보증형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 ① 이율보증형의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산출시 적용되는 적용이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합니다)은 제30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단,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 (별표 1 참고)이 적용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적용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적립됩니다.

제32조~제38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32조 (실적배당형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실적배당형의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제33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실적배당형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특별계정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 기구로 운용할 경우 투자자그룹(이하 "클래스"라고 한다) 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체계 등 을 적용하여 기준가를 산출합니다.
- ③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 ④ 계약자는 제13조 (계약자의 운용방법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제35조 (실적배당 형 펀드의 유형)에 규정된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

- ①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계산은 적립금과 부담금에 대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제35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밸류혼합형: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 산의 90% 이내, 저평가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4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 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 2. 그로스혼합형 :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90%이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40% 이 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 3. 자산배분혼합형 :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 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90%이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 4. 글로벌혼합형: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펀드 재산의 90%이내, 미국, 유럽, 일본, 이머징마켓 및 한국 등 글로벌주식 [해외주식시 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주식예탁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등 포함합니다] 및 글로벌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펀드재산의 4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 5. 인덱스혼합형: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펀드 재산의 90%이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4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투자에 있어 KOSPI200지수를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 6. 일반주식형: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며,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40% 이내,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 7. 단기채권형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합니다]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특히, 채권은 편입일현재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국채 2년 이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2년 이하) 등에 투자합니다.
- 8. 채권형 :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합니다]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 투자합니다.
- 9. 업종대표주혼합형: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 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이내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합니다], 채권 관련 파생상품,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부분은 업종별 대표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도모합니다.
- 10. 케이인덱스(K-index)혼합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

(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주식 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합니다], 채권 관련 파생상품,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서 주로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 등을 목표지수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투자하여 목표지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 11. 인덱스주식형: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200지수)을 목표지수 (Target Index)로 하여 목표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 12. 삼성그룹주식형: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 부분은 삼성그룹 계열 종목 등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수익증권 (ETF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상기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6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운용할 경우 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 체계 등을 적용하여 기준가를 산출합니다. 단, 각 클래스별 자산은 펀드형태별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 ③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률이 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7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클래스별) =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자산 - 특별계정 운용보수

제38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 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9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13조 (계약자의 운용방법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40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가입자 및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급여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급여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 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이 계약과 관련한 제반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일치한 경

우 급여 지급 및 기타 업무처리상 인감도용으로 발생한 손해

- 2. 계약자로부터의 지시, 청구, 통지, 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업무
- 3.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의한 사무처리 업무
- 4.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시 보험업법 및 관계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 7. 기타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4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 운용방법(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및 이율보증형) 은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편드를 선택한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4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6조 (금리연동형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제28조 (금리연동형Ⅱ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제32조 (실적배당형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제32조 (실적배당형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8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 (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30일 (비영업일 포함) 이내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비영업일 포함)이 경과한 첫영업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거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30일 (비영업일 포함) 이내에도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률이나 규정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별표1)

시장가격조정률

1.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합니다.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 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1- 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 지환급금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frac{1 + i_j}{1 + i_h}\right)^{n + \epsilon/\eta}$$

MVA의 최대한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2년, 3년, 5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frac{1 + i_j}{1 + i_h + 0.5\%} \right)^{n + \epsilon/\eta}$$

MVA의 최대한도는 10%,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 ①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변경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가

-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 ε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일단위기간

- n. : 365 또는 366

② i; :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점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③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시점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기준이 율(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_ 잔여보증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i_h = i_{h-1} + (i_{h+1} - i_{h-1}) × m' / (12×n') 잔여보증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i_h = i_{h+1}

- 잔여보증기간에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 중

• i_{h-1} :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 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 i_{h+1} :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 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 n'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

- m'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미만 절상)

3.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무배당) 약 관

삼성생명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무배당)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후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전환일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1. 종신연금형
- 2. 플러스은퇴종신연금형(1형,2형,3형)
- 3. 확정기간연금형
- 4. 상속연금형
- ③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 10조[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로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이 날은 연금지급개시일입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연금 지급은 「제1항에서 정한 연금지급개시일 + 1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중 퇴직한 자로서 이 특약의 계약자입니다.

제4조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종신연금형 및 플러스은퇴종신연금형 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는 제외)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확인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플러스은퇴종신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이며, "확정기간연금형" 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이 특

약의 부가시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8조【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금 지급개시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으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년월일이 1988년 10월 2일이고, 계약일 현재 일자가 2009년 4월 13일인 경우의 보험나이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21세가 됩니다.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개월 11일 = 21세

제2관 부담금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부담금의 납입】

이 특약의 부담금은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수령한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관 급여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제4조[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의 지정]에서 정한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생존연금(별표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 【적용이율의 적용】

- ① 이 특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특약건별로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특약의 매년 계약해당일이 속한달의 적용이율로 하여 전환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리연동형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금리연동형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단,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 금리연동형 기준이율 >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직전 3개월간의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2 + 지표금리×1) ÷ 3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적용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적립됩니다.

제12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제11조[적용이율의 적용]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4관 급여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급여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 또는 해지환급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4조【급여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3조[급여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0조[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6조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연금 지급기준표

□ 생존연금 (약관 제10조)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연금지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살아있을 때	이 특약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회, 20회 또는 30회 보증지급)		
플러스은퇴 종신연금형 (1형,2형,3형)	연금지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살아있을 때	이 특약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플러스연금지급기간동안의 연금액이 플러스연금지급기간외의 기간에 지급되는 연금액의 1.5배가 지급되도록 계산한 연금액 지급(30회 보증지급)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살아있을 때	이 특약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추가지급]		
확정기간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연금지급기간 (5,10,15,20,30, 40,50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	이 특약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10,15,20,30,40,50 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 지급		

- ㈜ 1. 생존연금의 계산은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적용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2. 이 특약의 적용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용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액(플러스은퇴종신연금형의 플러스연금지급기간 연금액 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액의 1.5배)과 동일하나, 연금지급개시이후의 적용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액(플러스은퇴종신연금형의 플러스연금지급기간 연금액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액의 1.5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적용이율」(연복리 2.0%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특약 건별로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특약의 매년 계약해당일이 속한달의 적용이율로 하여 전 환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4. 플러스은퇴종신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전환일에 1형, 2형 또는 3 형 중에서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하신 유형에 따라 아래의 플러스연금 지급기간동안에는 플러스연금지급기간외의 기간에 지급되는 연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형	플러스연금지급기간		
1형	연금지급개시 10년 후부터 연급지급개시 30년 후까지의 기간		
2형	연금지급개시 15년 후부터 연급지급개시 30년 후까지의 기간		
3형	연금지급개시 20년 후부터 연급지급개시 30년 후까지의 기간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 20회 또는 30회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10회, 20회 또는 3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플러스은퇴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30회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회수(5회,10회,15회,20회,30회,40회,5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 6. 종신연금형과 플러스은퇴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내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을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수 있습니다.
- 7. 종신연금형 또는 플러스은퇴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경 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연금 전환일에 즉시 연금 지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8. 연금액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 3개월, 매 6개월로 나누어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